제96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전환사채 등에 대한 공시 강화(강화) ㅇ(CB 등) 콜옵션 행사, 만기전 취득 CB에 대한 공시 강화*(제4-4조②·④) *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, 발행기업이 만기 전 취득시 공시의무 부과 ▶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-4 2.전환가액의 하향조정 허용범위 제한(강화) ㅇ 전환가액 조정(리픽싱) 최저한도 예외적용 합리화*(제5-23조제2호) * 주주총회 특별결의(건별)를 구한 경우에만 리픽싱 최저한도(70%) 예외적용 허용 ㅇ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방지*(제5-23조제4호) * 증자·주식배당시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조정 허용 ▶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-23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· 직위 신설(신설) ㅇ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및 직위 신설 – 금융회사등에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 (고시 2년 6개월 후부터 적용) ㅇ 사내이사·업무집행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부여 (고시 6개월 후부터 적용) ▶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조,제89조	1.비중요
3	화물운송서비스(택배)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화물운송서비스(택배) 평가 항목 및 기준 변경(강화) ㅇ 일반택배 분야 서비스 평가항목으로 도서지역 배송품질 신설 ㅇ 종사자 측면 평가 신설(안 별표 1, 별표 2) – 서비스평가 영역으로 종사자 측면을 신설하고, 평가항목으로 종사자 처우만족도, 보호조치 이행수준, 산재 · 고용보험 가입비율을 신설 ㅇ 일반택배 및 기업택배 분야 서비스 평가항목 중 차별화 서비스 관련, 세부 평가기준 합리화 ▶화물운송서비스(택배) 평가업무 지침 전체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운항승인의 요건 신설(신설) ㅇ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하려는 자에 대한 운항 승인의 신청 요건 신설 – 운항해역 안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실증하고자하는 자는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이어야 하며, 시범운항 및 실증 상세계획, 책임보험가입증서, 안전성평가 결과, 보고의무이행확약서, 해수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 및 결과 등을 갖추어 신청 ▶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	1.비중요
5	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자율운항선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신설(신설) ㅇ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 신설 –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·교육내용, 교육시설·교육장비, 전문 교수요원,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갖추어야 함 ▶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자율운항 선박의 안전 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(신설) ㅇ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 - ①자율운항선박 보유·운용, ②구매·건조·개조하여 자율운항선박 보유·운용하려는 경우, ③자율운항선박 기자재 제작·판매·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평가 신청이 가능 – 안전성 평가 신청자는 관련 필수자료를 평가기관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)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(해수부령안 제3조제2항) ▶자율운항 선박의 안전 운항에 관한 규칙 제3조	1.비중요
7	가축검정기준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당대검정 조건 및 검정방법(강화) ㅇ 당대검정 조건 및 검정방법 추가(개정안 제4조, 별표5) – (제2항제1호)당대검정우는 혈통등록된 수송아지 – (제2항제2호)당대검정우는 조부모 및 증조부모까지 혈통등록이상 등록 – (별표5)한우 유전체정보 분석 칩은 단일염기다형성(SNP) 유전체정보 5만개 이상 분석이 가능한 칩이어야 함 ▶가축검정기준 제4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 6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후보씨수소 선발대상 검사기준 등(강화) ㅇ 후보씨수소 선발대상 검사기준 변경(개정안 제7조) – (제2호)후보씨수소 선발대상의 월령을 12~18개월에서 12~14개월령 내외로 변경 – (제3호)대상형질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정확도 50% 이상일 것 – (제6호)가축전염병(구제역, 브루셀라병, 결핵병, 요네병, 소류코시스) 검사결과 음성일 것 ▶가축검정기준 제7조 3.후대검정우 선발기준(강화) ㅇ 후대검정 축군 대상기간 변경(안 제11조제1항) – ‘상반기(5~6월), 하반기(11~12월) ‘에서 ‘상반기(1~2월), 하반기(7~8월)’로 변경 ㅇ 검정소 후대검정우 선발기준에 가축전염병 검사 결과 추가(안 제11조제3항제3호) – 국립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 · 도 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(구제역, 브루셀라병, 결핵병, 요네병) 검사결과 음성일 것 ▶가축검정기준 제11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후보씨수소의 실격처리 기준(강화) ㅇ 후보씨수소 실격처리 기준 추가(안 제13조) – (제2호)후보씨수소로 선발된 후 2년 이내에 후대검정용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– (제3호)후대검정용으로 생산한 송아지를 후대검정하지 않은 경우 – (제4호)보증씨수소 선발에서 탈락한 경우 ▶가축검정기준 제13조 5.보증씨수소 선발기준(강화) ㅇ 보증씨수소 선발기준 추가(개정안 제14조제3항) – (제1호)유전능력평가 정확도가 대상형질별로 70%이상이거나 검정소후대검정을 종료한 두수가 씨수소 마리당 6두 이상인 것 – (제2호)후대검정우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– (제3호)가축전염병(구제역, 브루셀라병, 결핵병, 요네병, 소류코시스) 검사결과 음성인 것 ▶가축검정기준 제14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6.씨수소 정액생산·보관·처리 기준(강화) ㅇ 제13조 규정에 따라 후대검정 미참여, 보증씨수소 선발 탈락 등으로 실격된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실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처분 ▶가축검정기준 제15조	
8	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(환경부)	1.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(강화) ㅇ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 150종*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수입 · 반입 관리 * 포유류 5종, 어류 15종, 연체동물 5종, 곤충 54종, 식물 71종 ▶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제2조	1.비중요
9	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(환경부)	1.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(강화) ㅇ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높음으로 판정된 ’ 열대긴수염개미 ‘와 ’ 물여뀌바늘 ‘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 ▶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제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0	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강화(과라나 함유 고체식품등, 당알코올 함유 제품)(강화) ○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등에 "고카페인 함유", "총 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(또는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)" 및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○ 당알코올류 과량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, 주의사항 표시대상 및 표시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해당 제품이 당알코올 함유 제품임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 ▶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, 별표2 2.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확대(강화) ○ 영양표시 대상에 77개 식품유형 추가·확대 ▶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, 별표4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소방청)	1.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(신설) ○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을 위한 인가 절차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– (인가절차)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하고 소방청장에 인가를 받은 후, 소방청장은 인가 사실을 공고 – (정관) 협회의 목적 ·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, 업무 및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▶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,제20조의3	1.비중요
12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부실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강화(강화) ○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, 안전도의 위해를 초래하는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‘2~4개월’에서 ‘7~9개월’로 강화 ▶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	1.비중요